

「생활교육원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8. 1. 17. 개정 판 (시행 2018. 1. 1.) → 2019. 5. 13. 개정 판 (시행 2019. 1. 1.)

바뀜 28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24/compare?from=759&to=904>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9:19:35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명칭) 본 생활교육관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관이라 칭한다. 다음과 같은 각 건물로 정한다.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살렘관, 만나의 집	제1조(명칭)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한다. 다음과 같은 각 건물로 정한다.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살렘관, 만나의 집(개정 2019-05-13)
제2조(목적) 본 생활교육관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훈련 및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훈련 및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감독) 본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생활교육관을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13-08-28)	제3조(운영감독) 본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생활교육원을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13-08-28)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생활교육원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원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생활교육관 운영규정은 생활교육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생활교육원 운영규정은 생활교육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6조(직제)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② 생활교육관 총무 1명 ③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④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⑤ 총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제6조(직제)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9-05-13) ②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③ 생활교육원 총무 1명 ④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⑤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⑥ 총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제7조(임원임명 및 임기)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관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	제7조(임원임명 및 임기)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원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전인교육원장(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인성교육센터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 총무, 생활관영양사.(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전인교육원장(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인성교육센터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 총무, 생활관영양사.(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제9조(임원회의) 각 생활교육관별로 관장, 조교,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관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9조(임원회의) 각 생활교육원별로 관장, 조교,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원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10조(식당직원회의)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수석생활교육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10조(식당직원회의)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원장, 재무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수석생활교육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11조(방장회의) 효율적인 생활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방장회의를 개최하며 생활교육부장이 의장이 된다.	제11조(방장회의) 효율적인 생활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방장회의를 개최하며 생활교육부장이 의장이 된다.
제12조(입사자격) 본 생활교육관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관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08-28) 2.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제12조(입사자격) 본 생활교육원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원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원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08-28) 2.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제13조(입사절차) 생활교육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전(㉮)학병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 3. 주민등록증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6-02-29) 4. 건강진단서	제13조(입사절차) 생활교육원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원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전(㉮)학병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 3. 주민등록증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6-02-29) 4. 건강진단서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원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현 행	개 정 안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18조(명예제도) 생활교육관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	제18조(명예제도)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원 내부수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13>
제19조(방 배정) 생활교육관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 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방 배정) 생활교육원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 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영성교육) 생활교육관의 영성교육은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이 영성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관의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8-01-17)	제20조(영성교육) 생활교육원의 영성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이 영성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8-01-17)
제23조(게시판 이용)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교육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게시판 이용)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교육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생활교육관의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생활교육원의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제26조(금지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제26조(금지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11. 이성을 생활교육관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11. 이성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제27조(외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제27조(외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원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생활교육원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제29조(상벌규정) 타의 모범이 되는 방과 개인은 포상하며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제29조(상벌규정) 타의 모범이 되는 방과 개인은 포상하며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제30조(처벌)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제30조(처벌)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제31조(관생의 권리)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생활교육관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제31조(관생의 권리)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원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생활교육원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제32조(자치회) 생활교육관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32조(자치회) 생활교육원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33조(자동차 보유)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제33조(자동차 보유)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명칭) 생활교육관 살렘관은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신학숙으로 운영한다.	제36조(명칭) 생활교육원 살렘관은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신학숙으로 운영한다.
제38조(운영) 생활교육관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운영)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생활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제4호, 제36조 및 제38조 중 "생활교육관"을 각각 "생활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직제)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 ① 생활교육원장
- ②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 ③ 생활교육원 총무 1명
- ④ 조교(각 생활관 1명씩)
- ⑤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 ⑥ 총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